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008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0089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8가합52703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E 주식회사

4. 주식회사 F

5. G

6. H

7. I

8. J

9. K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담당변호사 강성윤

변론 종결 2022. 1. 20.

판결 선고 2022. 2. 1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8가합527034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B과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2018. 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8. 2. 7. 접수

제66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8. 4. 2. 접수 제193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별지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E 주식회사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2018. 2.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 피고 주식회사 F과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2018. 2.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3) 피고 G과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2018. 2.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다. 별지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E 주식회사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2018. 2.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E 주식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8. 2. 20. 접수

제55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F과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2018. 2.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F은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8. 2. 20. 접수

제55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G과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2018. 2.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G은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8. 2. 20. 접수 제55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별지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H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2018. 2.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마. 별지목록 제10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I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2017. 10.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I는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7.

12. 14. 접수 제934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바. 1) 별지목록 제13, 14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별지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J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2018. 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13,953,109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J, K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953,1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 원고의 피고 J, K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H,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J, K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J, K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아래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피고 B, C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 제1. 가.항과 같다.

[피고 E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F, 피고 G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 제1. 나. 다.항과 같다.

[피고 H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 제1. 라.항과 같다.

[피고 I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 제1. 마.항과 같다.

[피고 J, K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J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만 한다) 사이에 별지목록 제13, 14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별지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2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J는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K은 피고 J와 공동하여 250,000,000원 중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① 제1심에서 피고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F, G에 대하여 별지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해당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 종결되어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합7235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후자의 청구를 철회하는 것으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변경하였고, ② 제1심에서 피고 H에 대하여 별지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 종결되어 원고가 위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02372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후자의 청구를 철회하는 것으로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변경하였으며, ③ 이 법원에서 피고 K에 대하여 피고 J와 공동하여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④ 이 법원에서 피고 J, K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J와 A 사이에 별지목록 제13, 14항 기재 부동산의 지분 1/2 및 별지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56,110,505원 및 그중 14,284,229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41,826,276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각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J, K은 공동하여 위 가액배상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양적 또는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그 목적물과 청구원인은 주위적 청구와 동일하므로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등 참조), 예비적 청구로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이와 같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한편, 제1심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은 원고와 A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항부터 제9면 제11항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피고 A' 및 그 이하의 각 '피고 A'를 'A'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1) 별지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U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E, 피고 F이 각 480,000,000원을, 피고 G이 360,000,000원을, 광명세무서가 247,002,453원을, V은행의 양수인 W유한회사가 454,473,745원을 각 배당받았고,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피고 E, 피고 F, 피고 G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별지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X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H는 360,000,000원을, 피고 K은 54,664,731원을 각 배당받았고, 위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었던 피고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3) 원고는 2021. 1. 15. 피고 H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02372호로, 2021. 3. 16. 피고 E, 피고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합7235호로 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9 내지 11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30 내지 33호증'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A와 피고 B, E, F, G, H, I, J(이하 '피고 B 등 수익자'라 한다) 사이의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의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연대보증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A의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A가 자신의 대출금 채무 외에 상당한 금액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L이 2018. 2. 20. 대출원리금을 납입하지 않고 2018. 2. 13. 회생신청을 하는 등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3. 30. M은행에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L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실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법리에 예외를 두어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무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무가 감면되면 연대보증채무에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그 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L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L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 901,380,744원(원금 897,000,000원, 이자 4,280,744원)이 시인되어, 그중 채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2%는 출자전환하고 48%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5%는 1차 연도(2019년)에 변제, 10%는 2차 연도(2020년)에 변제, 24%는 3차 연도(2021년)부터 4차 연도(2022년)까지 매년 12%씩 균등분할 변제, 22%는 5차 연도(2023년)부터 6차 연도(2024년)까지 매년 11%씩 균등분할 변제, 30%는 7차 연도(2025년)부터 9차 연도(2027년)까지 매년 10%씩 균등분할 변제, 9%는 10차 연도(2028년)에 변제, 출자전환 채권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에 소멸하며, 개시 후 이자는 회생인가시점에 전액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는바, 이에 의하면, L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변제하여야 하고, 한편 A는 L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결국 A는 주채무자인 L과 같이 아래 표에 따라 분할변제할 의무가 있다.

1	2019-12-30	20,913,138
2	2020-12-30	41,826,276
3	2021-12-30	50,191,531
4	2022-12-30	50,191,531
5	2023-12-30	46,008,903
6	2024-12-30	46,008,903
7	2025-12-30	41,826,276
8	2026-12-30	41,826,276
9	2027-12-30	41,826,276
10	2028-12-30	37,643,648
합계	418,262,758	

그런데, L은 2019. 12. 31. 원고에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변제 예정금액 20,913,138원 중

6,628,909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L이나 A가 위 분할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A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그 액수가 106,302,036원(= 2019. 12. 30. 변제할 20,913,138원 + 2020. 12. 30. 변제할 41,826,276원 + 2021. 12. 30. 변제할 50,191,531원 - 변제금 6,628,909원)에 달할 뿐 아니라, 피보전권리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 참조), 현금변제 부분의 일부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들은 A의 재산처분행위가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현재 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원고로서는 A 소유 부동산을 경매하여 배당을 통하여 채권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가 각 재산처분행위 당시에는 물론 이 법원의 변론종결 무렵에도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A의 채무초과 여부

1) A의 적극재산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17,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가 피고 B 등 수익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을 할 당시 A는 아래 표 '이 사건 각 계약시' 항목란 기재와 같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10. 기준 적극재산의 가액은 아래 표 '현재' 항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금액 단위 원).

1	강원 평창군 Y 대 935m ² (별지목록 제13항)	1,200,000,000 (별지목록 13, 14항: 8억, 2) 별지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은 A의 단독 소유로서 그 등기부(갑 제6호증의 15)상 거래가액이 4억 원이므로 이를 당시 가액으로 인정하고, 별지목록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갑 제6호증의 14)상 거래가액이 16억 원이므로(전체 거래가액이 20억 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별지목록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A 지분의 가액을 8억 원[= (20억 원 - 4억 원) × 1/2]으로 인정한다. 15항: 4억)	0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4, 15 (별지목록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 A 1/2지분 보유)
2	강원 평창군 Y, Z 지상 건물(별지목록			

1	강원 평창군 Y 대 935m ² (별지목록 제13항)	1,200,000,000 (별지목록 13, 14항: 8억,2) 별지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은 A의 단독 소유로서 그 등기부(갑 제6호증의 15)상 거래가액이 4억 원이므로 이를 당시 가액으로 인정하고, 별지목록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갑 제6호증의 14)상 거래가액이 16억 원이므로(전체 거래가액이 20억 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별지목록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A 지분의 가액을 8억 원[= (20억 원 - 4억 원) × 1/2]으로 인정한다. 15항: 4억)	0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4, 15 (별지목록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 A 1/2지분 보유)
	제14항)			
3	강원 평창군 Z 대 774m ² (별지목록 제15항)			
4	강원 평창군 AA(1/2지분)	750,000,000	1,933,854,750	현재는 적극재산에서 제외 다툼 없는 사실, 현재 시가 피고들 주장 인정
5	광명시 T 대 463m ² (별지목록 제2항)	2,027,200,000	0	다툼 없는 사실,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U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이 2,027,200,000원이므로 이를 가액으로 인정한다. 원고와 피고들 주장의 2,021,476,198원은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현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U로 경매되어 소멸
6	광명시 T 건물 AB동 134.40m ² (별지목록 제3항)			
7	광명시 T 건물 AC동 102.83m ² (별지목록 제4항)			
8	광명시 AD 전 1004m ² (별지목록 제5항) 광명시 AE 도로 100m ² (별지목록 제6항) 광명시 AF 답 201m ² (별지목록 제7항)			
9	광명시 AG 전 516m ² (별지목록 제8항)	330,000,000	330,000,000	갑 제35호증
10	광명시 AH 전 1775m ²	1,278,000,000	1,278,000,000	
11	성남시 분당구 AI 제지하층 AJ호 80.38m ² 건물 (별지목록 제1항)	280,000,000	0	다툼 없는 사실, 현재는 적극재산에서 제외

1	강원 평창군 Y 대 935m ² (별지목록 제13항)	1,200,000,000 (별지목록 13, 14항: 8억,2) 별지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은 A의 단독 소유로서 그 등기부(갑 제6호증의 15)상 거래가액이 4억 원이므로 이를 당시 가액으로 인정하고, 별지목록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갑 제6호증의 14)상 거래가액이 16억 원이므로(전체 거래가액이 20억 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별지목록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A 지분의 가액을 8억 원[= (20억 원 - 4억 원) × 1/2]으로 인정한다. 15항: 4억)	0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4, 15 (별지목록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 A 1/2지분 보유)
12	위 건물의 대지 지분 25.85m ² (별지목록 제1항)			
13	서울 양천구 AK AL(별지목록 제9항)	840,045,000	0	서울남부지방법원 X의 매각대금의 1/2 (A 1/2지분)
14	서울 양천구 AM아파트 AN-AO	1,293,000,000(4)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가 2018. 1. 15. 이 부동산에 관하여 AU, AV에게 2017.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동산은 피고 I에 대한 관계에서만 적극재산에 해당한다.	0	다툼 없는 사실, 현재는 적극재산에서 제외
15	세종시 AP 대 2820m ² (별지목록 제10항)	320,000,000	0	다툼 없는 사실, 현재는 적극 재산에서 제외
16	세종시 AP, AQ동 건물 140.65m ² , 부속건물 194.85m ² (별지목록 제11항)			
17	세종시 AR 임야 30985m ² (별지목록 제12항)			
합계	8,318,245,000	3,541,854,750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계약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A와 피고 I 사이의
2017. 10. 20. 매매계약이고, 가장 나중에 이루어진 것은 A와 피고 H 사이의 2018. 2. 21.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서 4개월가량 차이가 나는바,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가액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0, 32, 3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표 순번 5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U 경매절차에서 법원의 매각대금이 2,027,200,000원으로 산정된 사실[피고들은 토지의 가격을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하여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합계 2,983,533,800원(= 1,751,529,000원 + 60,345,600원5) + 14,396,200원6) + 1,120,464,000원 + 36,810,000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위 표 순번 9, 10 기재 부동산의 경우 원고의 자문요청에 따른 AS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가 1,608,000,000원으로 산정된 사실(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시 2,556,756,000원, 현재 3,460,555,500원으로 주장하는바 이는 위 감정가와 현저한 차이가 난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표 순번 5 내지 10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를 공시지가의 3배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위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체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AT에 대한 365,000,000원의 채권이 A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가 AT에 대하여 365,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T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39호로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A의 위 채권은 회생채권이 되었고, 그 회생절차가 2019. 10. 24. 종결된 점, A가 AT로부터 별도의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가 위 채권을 쉽게 변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므로, 위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위 표 순번 1, 2, 3, 11, 12, 15, 16, 17 기재 각 부동산도 A의 현재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8485 판결 등 참조), A가 이 사건 각 계약 중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계약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A의 소극재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19, 37호증, 을 제20,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는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아래 표 '이 사건 각 계약시' 항목란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10. 기준 채무의 가액이 아래 표 '현재'

항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금액 단위 원). 7)

1	원고 (보증)	872,192,840	426,033,848)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법리에 예외를 두어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무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주채무자인 L과 같은 418,262,758원이 된다.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피고들이 자인(901,380,744)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주장 금액
2	AW은행 광명 학온	910,000,000	910,000,000	다툼 없는 사실(원고가 별도로 주장하는 7억은 이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AW은행 광명 학온	170,000,000	170,000,000	갑 제19호증, 피고들이 자인(221,000,000)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주장 금액
4	V은행 AX센터	400,000,000	0	갑 제19, 32호증, 피고들이 자인(454,473,745)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주장 금액, 현재는 별지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부동산 임의경매에서의 배당으로 소멸
5	V은행 AX센터	199,451,000	199,451,000	갑 제19호증 (원고는 2억이라 주장)
6	기업은행 (보증)	778,581,000	778,581,000	갑 제19호증, 피고들이 자인(1,155,038,660)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주장 금액
7	V은행 (보증)	1,779,444,004	1,779,444,004	원고 주장 금액(갑

1	원고 (보증)	872,192,840	426,033,8488)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법리에 예외를 두어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무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주채무자인 L과 같은 418,262,758원이 된다.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피고들이 자인(901,380,744)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주장 금액
				제19호증에 기재된 29억5천만) 범위 내에서 피고들 자인 금액
8	AW은행 (보증)	60,000,000	60,000,000	갑 제19호증
9	M은행 (보증)	367,516,874	367,516,874	원고 주장 금액(갑 제19호증에 기재된 683,600,000) 범위 내에서 피고들 자인 금액
10	AY은행 (보증)	292,057,674	292,057,674	원고 주장 금액(갑 제19호증에 기재된 400,000,000) 범위 내에서 피고 자인 금액
11	AZ (보증)	3,026,471,000	21,727,2669) 피고들은, 'A의 AZ에 대한 채무는 계약이행보증이나 하자이행보증으로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하는데, A가 2017. 12. 19. L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A가 대표이사로서 보증한 채무는 대부분 소멸하여 A 재직 당시 체결한 계약에 대한 보증채무 약 2,000만 원 상당액만이 남아 있을 뿐이므로, AZ 보증채무 3,026,471,000원은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3. 30. 무렵 A가 AZ에 대하여 3,026,471,000원의 보증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당시 보증한 채무는 현재 21,727,266원만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재 A가 AZ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위 금액 상당이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갑 제19호증, 을 제22호증
12	BA공제조합 (가압류)	469,649,614	469,649,614	갑 제6호증의 9, 갑 제37호증
13	피고 E	480,000,000	0	피고들 자인, 현재는 별지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부동산 임의경매에서의 배당으로

1	원고 (보증)	872,192,840	426,033,848)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법리에 예외를 두어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무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주채무자인 L과 같은 418,262,758원이 된다.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피고들이 자인(901,380,744)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주장 금액
				소멸
14	피고 F	480,000,000	0	
15	피고 G	360,000,000	0	
16	광명세무서	400,000,000	152,997,547	피고들 자인, 현재 위 임의경매에서 일부 배당으로 감소
17	광명세무서	40,000,000	40,000,000	피고들 자인
합계	11,085,364,006	5,667,458,827		

이외에 원고는 A가 BB에 대하여 보증채무 25억 원, BC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 50억 원 등 합계 7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채무는 주식회사 BD가 강원 평창군 AA 지상 건물을 신축하면서 받은 PF대출을 A가 보증한 것으로, 위 건물이 이미 신축되어 그 가액이 약 96억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가액이 위 채무를 초과하므로 위 각 보증채무는 A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A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외에 다른 보증채무의 경우에도 주채무자인 L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되었으므로 A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 역시 감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 의하면 회생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주채무의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이나 감축되는 경우는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A가 피고 B 등 수익자들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을 할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음이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 등 수익자들에게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A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거래 경위, 자금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A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나 전득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이 해당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 한정되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 사해행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A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그 변제기가 유예되었을 뿐 여전히 남아 있고, 채무초과 상태인 A에게 다수의 채권자가 있는 점, 갑 제6, 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물 일부에 원고 외에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 또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어 그 강제집행 과정에서 A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서울남부지방법원 X 부동산임의경매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U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A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고, 현재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 이 사건 각 계약 전부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피고 J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 체결된 매매계약, A와 피고 E, F, G 사이에 별지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0.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A와 피고 H 사이에 별지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8. 2.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A와 피고 I 사이에 2017. 10. 20.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한편 A와 피고 J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제13, 14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별지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9. 체결된 각 매매계약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3,953,109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원상회복 의무 가) 피고 B, C의 원상회복의무

A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수익자인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8. 2. 7. 접수 제66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② 전득자인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8. 4. 2. 접수 제193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 F, G의 원상회복의무

A에게, 별지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E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8. 2. 20. 접수 제55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② 피고 F은 같은 등기소 2018. 2. 20. 접수 제55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③ 피고 G은 같은 등기소 2018. 2. 20. 접수 제55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10타)

피고 I의 원상회복의무

피고 I는 A에게 별지목록 제10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7. 12. 14. 접수 제934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J, K의 가액배상의무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별지목록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P리 부동산)의 경우, A가 피고 J에게 P리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위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A, 근저당권자를 Q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피담보채무액 5억 5,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J가 P리 부동산을 담보로 2018. 1. 19.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10억 원을 대출받아 Q은행의 선행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같은 날 피고 K에게 P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P리 부동산 중 A 지분의 가액이 12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가 피고 J에게 P리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공동담보가액은 6억 5,000만 원(= A 지분 가액 12억 원 - A가 채무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5억 5,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액수가 106,302,036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L에 대한 회생계획안에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연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도록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L은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기 이후에는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여야 할 것이며, 연대보증인인 A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1. 20. 현재 원고의 A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을 계산하면, 113,953,109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원금 106,302,0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7,651,073원(= 2,939,029원¹¹⁾ + 4,423,271원¹²⁾ + 288,773원¹³⁾]이 된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위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113,953,109원이 피고 J, K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되므로, 피고 J, K은 공동하여¹⁴⁾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113,953,1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E, F, G, H, I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J, K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영우

판사채동수

판사박혜선

별지

1) 나중에 이루어진 것은 A와 피고 H 사이의 2018. 2. 21.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서 4개월가량 차이가 나는바,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가액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별지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은 A의 단독 소유로서 그 등기부(갑 제6호증의 15)상 거래가액이

4억 원이므로 이를 당시 가액으로 인정하고, 별지목록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갑 제6호증의 14)상 거래가액이 16억 원이므로(전체 거래가액이 20억 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별지목록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A 지분의 가액을 8억 원[$(20\text{억 원} - 4\text{억 원}) \times 1/2$]으로 인정한다.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U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이 2,027,200,000원이므로 이를 가액으로 인정한다. 원고와 피고들 주장의 2,021,476,198원은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4)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가 2018. 1. 15. 이 부동산에 관하여 AU, AV에게 2017.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동산은 피고 I에 대한 관계에서만 적극재산에 해당한다.

5) 건물, 건물시가표준액 기준(을 제23호증)

6) 건물, 건물시가표준액 기준(을 제23호증)

7) 원고는 주로 A에 대한 2018. 3. 30.자 신용정보조회서(갑 제19호증)를 근거로 A의 소극재산 가액을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을 기초로 A의 소극재산 가액을 살피되, 피고들의 주장을 감안하여[예를 들어, A의 채무 중 L을 위한 보증채무는 L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시인된 액수(을 제20호증)가 실제 채무액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A의 소극재산 가액을 산정한다(상세 설명은 '증거 등' 항목란 참조). 이는 피고들에게 유리한 산정방식이다.

8)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법리에 예외를 두어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무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주채무자인 L과 같은 418,262,758원이 된다.

9) 피고들은, 'A의 AZ에 대한 채무는 계약이행보증이나 하자이행보증으로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하는데, A가 2017. 12. 19. L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A가 대표이사로서 보증한 채무는 대부분 소멸하여 A 재직 당시 체결한 계약에 대한 보증채무 약 2,000만 원 상당액만이 남아 있을 뿐이므로, AZ 보증채무 3,026,471,000원은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3. 30. 무렵 A가 AZ에 대하여 3,026,471,000원의 보증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당시 보증한 채무는 현재 21,727,266원만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재 A가 AZ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위 금액 상당이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10) 별지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미 말소되었다. 피고 H와 관련한 별지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와 마찬가지로 말소되었다.

11) 변제기가 2019. 12. 30.인 14,284,22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2,939,029원[= 14,284,229원 × (2년 + 21일/365일) × 1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12) 변제기가 2020. 12. 30.인 41,826,27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4,423,271원[= 41,826,276원 × (1년 + 21일/365일) × 10%]

13) 변제기가 2021. 12. 30.인 50,191,53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288,773원(= 50,191,531원 × 21일/365일 × 10%)

14) 수익자와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는 성질상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참조).